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남재일**

이 연구는 언론윤리를 기자집단의 직업이데올로기로 보고 한국 언론윤리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 나타나는 특수한 조건들을 언론윤리의 형성에 개입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언론윤리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윤리의 정립을 위한 언론현장의 실천 전략과 언론윤리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 변화 추이와 언론윤리 담론의 전개양상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의 언론윤리 담론은 윤리의 전제가 되는 직업적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도구적이고 수사적인 방향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한국 언론윤리의 성격은 언론윤리 강령의 수사적 성격, 구조화된 인식과 실천의 괴리, 책임과 윤리의 개념적 혼동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직업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윤리에 접근하는 기자집단 내부의 방식이나 사회적 논의의 양상이 기자의 직업적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주제어: 언론윤리, 직업이데올로기, 직업적 위치, 윤리강령, 수사적 성격

1. 문제제기

언론윤리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 언론윤리 분야는 1990년 이전까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연구 논문이나 저서는 물론 보고서나 현장기자들의 에세이조차 흔치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언론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논문의 수도 증가하면서 언론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다.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실천의 윤리적 수준도 낮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언론윤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언론사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양적·질적으로 서구 언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최경진, 2008; 김재영·양선희, 2007; 남재일, 2006a). 그나마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다. 2006년에 실시한 기자들의 윤리의식 조사에서 언론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전반적 인식은 ‘지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윤리적 취재보도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기자들의 태도는 언론윤리를 외부에서 부과되는 절대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소속사나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남재일, 2006a)

서구의 경우는 다르다.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와 함께 윤리가 정착됐기 때문에, 언론윤리는 직업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다. 워드(Ward, 2007, pp. 320)에 따르면, “서구의 언론윤리는 언론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부와 공중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이를 통해 공중의 신뢰를 얻고 정부의 간섭을 미연에 배제함으로써 언론의 독립과 자율성이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즉 언론윤리를 직업집단의 이익을 지켜주는 방패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준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 이 연구는 2009년 경북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commat@knu.ac.kr)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의 정론지는 강한 실천의지와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통해 직업이데올로기로 언론윤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윤리를 외부에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직업적 이익을 지키는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천의 유발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기자들의 윤리관은 실천의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은 1960년대부터 전문직화가 진행돼 외형적 조건만 보면 전문직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윤리 수준은 외형적인 발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이정훈·김균, 2006; 이종숙, 2004; 강명구 : 1993).

한국 기자들은 왜 윤리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가신 의무로 인식하게 됐을까? 기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언론윤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사회의 요구나 기자들의 인식 양쪽 모두에서 기자집단의 과도한 부담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학자들의 논의는 서구 언론을 기준으로 한국 언론의 윤리의식이나 실천의 수준을 평가하고 윤리의 중요성을 당위적인 수준에서 강조하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언론윤리가 정착하려면 언론의 정치적 자유와 편집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서구의 경험이다. 한국 언론은 1987년 이후에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재까지도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은 미미하다. 언론의 책임과 윤리는 자유가 전제될 때 사회적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사의 자유는 있지만 기자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기자들의 행위로 귀결되는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기자들에게 “당위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언론사주에 종속된 직업적 위치에서는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현재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주로 제도로서의 언론을 향한 사회적 책임론이란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 실천주체인 개별기자의 직업적 현실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를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큰 틀에서 접근하는 이런 경향은 언론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기자들이 기자직의 정체성에 대해 쓴 글에는, ‘샐러리맨’, ‘직장인’이라는 표현은 경멸의 의미, ‘지사직’, ‘지식인직’이란 표현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에 이상적인 기자상으로 폭넓은 동의를 얻었던 ‘지사적 인간’이 전문직업인주의를 강조하는 현재에도 기자들의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기자의 이상으로 남아 있다. 기자들이 지사의 정체성 속에서 윤리를 상상하면 ‘직업인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자세보다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행동에 주목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쓰느냐’는 중요하고 ‘어떻게 취재하고 쓰느냐’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언론윤리강령의 보도윤리 조항들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

이처럼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자들이 인식은 현재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과부하가 걸려 있다. 이 상황에서는 개별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을 이끌어 낼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언론윤리에 관한 논의는 선언적 수준에서 공회전할 공산이 크다. 이 상황이 개선되려면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방식과 기자들의 수용태도가 동시에 변해야 한다. 즉 사회적 요구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자들의 윤리 인식은 공격적인 지사적 역할이 아니라 방어적인 직업적 행동규범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1) 2006년 실시한 기자윤리의식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특종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취재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였다(남제일, 2006a).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언론윤리가 제도로서의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할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기자라는 전문직의 직업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의 직업이데올로기는 직업집단이 직업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요구를 현실적으로 절충하는 교섭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언론윤리의 특수한 성격과 위치가 규명되고 동의될 때 사회적 요구와 기자들의 인식의 괴리는 좁혀질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이 연구는 직업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언론윤리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에 개입한 특수한 사회적 관계,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 변화, 기자집단과 언론윤리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언론윤리의 논의 지평을 구체화하고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기존의 논의와 이 연구의 성격

한국에서 언론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미미하다. 『한국언론학보』에 언론윤리를 주제로 다룬 논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92년이고,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해도 게재 논문은 10여편 남짓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90년대 후반부터 나온 것들이다. 미국의 경우 1890년대부터 언론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이론화가 시도되고 학문적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는 미디어 기업의 집중과 오락화가 심화되면서 언론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대두하던 시점이다. 이 시기 언론윤리 연구는 윤리학과 언론의 속성을 접목시켜 언론의 전문직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응용윤리학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김춘옥, 2008) 한국과 미국의 연구를 묶어서 언론윤리 연구 경향을 유형화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사 텍스트 비교분석, 언론인 설문조사, 관행분석, 윤리강령 비교분석 등을 통해 윤리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경향이다. (김재영·양선희, 2007; 최경진, 2008; 유홍식, 2003; 이은택, 2002; 김영옥, 2004) 한국 언론윤리 연구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한국 언론의 윤리 수준이 상당한 지체를 보인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²⁾ 이들 연구는 한국 언론 실천의 양태를 평가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 언론윤리의 현실을 드러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언론윤리를 규범적 행위차원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언론윤리와 관련된 뉴스 생산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센베르크의 저널리즘 맥락에 대한 모델을 분석틀로 한국 언론의 윤리 점검 시스템을 분석한 김영옥(2004)의 연구와 체계이론을 분석틀로 한국 언론윤리의 생성메커니즘을 제시한 이경희(2006)의 연구는 논의 지형을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현대윤리학 이론으로 언론윤리의 철학적 성격을 해명하고 언론인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2) 김재영·양선희(2007)는 조선일보와 뉴스타임스의 윤리강령 및 보도행태를 비교분석하여 한·미 신문간의 윤리적 실천 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경진(2008)은 한국과 독일의 신문윤리강령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신문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라는 규제의 형식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홍식(2003)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방송저널리즘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조작을 언론윤리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은택(2002)은 한국 언론인들의 윤리 의식 수준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콜버그의 도덕발달 6단계 가설을 적용하여 한국 기자들의 도덕발달 단계를 측정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기자들의 도덕발달 단계가 상당한 수준인데, 실제 윤리적 실천은 상당한 지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의 방법론을 모형화하는 이론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언론윤리를 이론화 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Merrill, 1997; Lambeth, 1992; Christians, 2004)가 여기에 해당된다.³⁾ 이들 연구는 언론윤리를 이론화하고 현장에서 실천의 지침이 될 만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이론과 관행을 매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한국 언론의 보도양태를 ‘과잉표출’로 전제하고 푸코의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면서 절제된 저널리즘을 촉구하는 이영주(2006)의 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언론의 전문직 성격을 분석한 연구(Black and Barney, 1990; Allison, 1986; Kimball, 1965; 이종숙, 2004; 강명구, 1993) 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언론의 객관주의 이념 및 관행을 비판한 사회학적 연구(Shudson, 1978; Altheide, 1976; Tuchman, 1978; Fishman, 1980; Snow, 1983; Gans, 1979)이다. 이들 연구는 전문직 조건으로 언론윤리를 고찰하거나 언론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객관성을 비판하는 형태로 언론윤리와 관계된다. 언론의 전문직 여부는 ‘언론은 전문직이지도 않고 전문직이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Merrill, 1997; Tuchman, 1978; Kaul, 1986)도 있지만, 대체로 구조적 수준에서는 전문직이 아니지만 태도적 수준에서는 전문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Allison, 1986; McLeod and Hawley, 1964; Kimball, 1965). 기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면 윤리강령의 존재는 전문직 요건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터크만(1978)처럼 언론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객관주의 관행을 기자의 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간주하는 시각, 즉 인식론적으로는 구성주의,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독점주의⁴⁾ 시각을 취하게 되면 언론윤리의 지위는 직업적 술수로 전락한다.

언론윤리가 어떤 형태든 언론실천을 안내할 근거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언론전문직에 대한 인정과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와 인정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워드(Ward, 2004/2007)의 저서 <언론윤리의 재발견>(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서구 언론윤리가 정착하는 과정을 언론에 의한 객관성의 수용의 역사이자 공중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객관성에서 실용적 객관성으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⁵⁾. 여기서 워드는 언론에 윤리가 부과되는 근거는 보편적인 도덕적 실체나 결과적인 사회적 공리가 아닌 언론과 사회의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는 계약주의를 주장한다. 또 언론윤리의 성격을 사회와 교섭을 통해 잠정적 동의를 얻은 ‘유해하지 않은’ 직업이데올로기로 가정한다. 전문직에 대한

3) 메릴(1997)은 윤리학의 큰 흐름인 목적론과 의무론을 절충해 의무목적론적 언론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적 가치로 진실성(Truthfulness), 불편부당성(Unbiased), 완전성(Full), 공정성(Fair)을 제시했다. 람베스(1992)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철학과 언론의 역할을 연결시켜 자유에 따르는 언론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5가지 실천적 원칙을 진실말하기(Truth-telling), 인간적일 것(Humaneness), 정의(Justice), 자유(freedom), 보살핌(Stewardship)으로 제시했다. 크리스천스(2004)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사회철학에 근거해 언론윤리를 기초한 메릴이나 람베스와 달리, 언론윤리의 발생 근거를 사회계약론에서 찾으려 언론윤리를 공동체적 민주주의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언론윤리를 자신에 대한 의무, 고객에 대한 의무, 조직과 회사에 대한 의무, 직업동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등 5가지 의무의 종합으로 봤다.

4) 전문직을 보는 시각은 크게 기능주의와 독점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주의는 전문직이 이타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점주의는 전문직이 집단의 지배와 권위를 확보하려는 이기적인 심리적 동인에 의해 성장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취한다(강명구, 1993).

5) 워드는 객관성을 전통적 객관성과 실용적 객관성으로 나누고, 전통적 객관성의 구성요소인 사실성, 공정성, 무편견, 독립성, 비해석, 중립성과 초연함 여섯 가지 중 비해석, 중립성과 초연함을 뺀 나머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객관성을 실용적 객관성으로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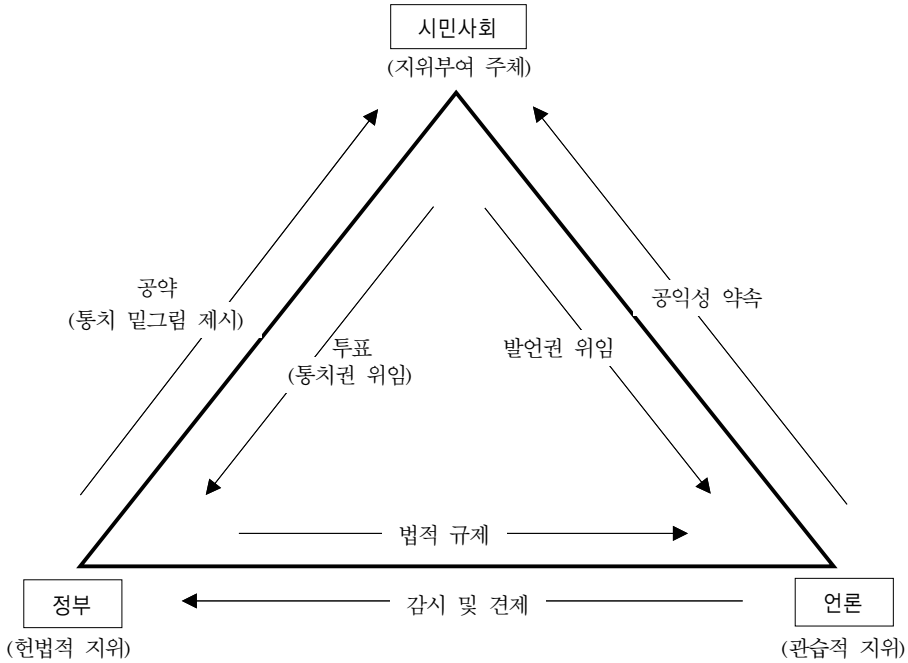
워드의 시각은 독점주의와 기능주의를 절충한 시각이다. 즉 동기 차원에서는 직업집단의 지배와 권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지만 사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는 집단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워드의 시각은 언론윤리를 철학적으로 정초하려는 두 번째 연구와 언론의 객관성과 언론윤리의 직업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해 언론의 직업적 권위를 해체하려는 세 번째 유형의 연구를 절충하고자 하는 시도처럼 보인다. 이 같은 시도는 교조적인 객관성과 급진적 구성주의가 충돌해서 전통적인 객관성의 규범영역이 공동화된 현실에서 대안적인 실천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론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워드의 계약주의, 전문직에 대한 독점주의와 기능주의적 시각의 절충, 실용적 객관성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언론윤리를 다양한 사회관계가 교섭되는 직업이데올로기로 가정하고, 이 구도 속에서 한국 언론윤리 형성과정의 특수한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따라서 언론윤리 형성과정의 분석틀,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언론윤리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관계에 대한 공식화가 중요하다. 다음 절은 여기에 관한 논의이다.

3. 이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직업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사회관계에 대한 역사적 추적을 요구한다. 언론윤리가 다양한 주체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돼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규범적 합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해석의 준거가 되는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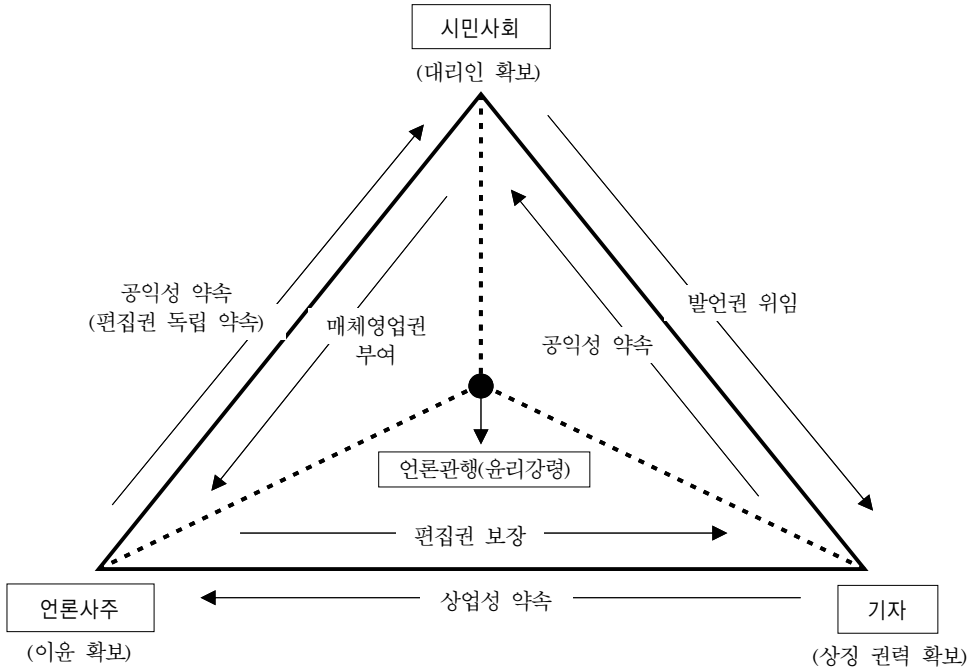
언론의 사회적 위치는 언론과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적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제도로서의 언론과 이해관계를 맺는 또 다른 사회적 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이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언론은 시민사회의 대변자로 가정된다. 리프만은(Lippman, 1927) ‘생업에 바쁜 주권자인 시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력인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자’, Gans(2005)는 ‘시민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 하버마스(Habermas, 1992)는 ‘계몽된 공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가정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대의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부에 통치권을 위임하게 되는데, 위임된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견제하는 역할로 언론에게 시민사회의 발언권, 즉 정부에 대한 비판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적 위상과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정부-언론 3자의 규범적 합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정부-언론의 규범적 합의 관계

정부는 통치의 밀그림을 공약을 통해 제시하고 시민은 투표로 통치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정부는 공약의 이행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대표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 둘의 계약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통치권의 위임이후 공약 이행여부 및 제반 정책에 유권자의 의지가 관철되는지 대표성을 견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 이 지점에서 언론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민사회가 발언권을 위임하는 또 다른 대리인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이 둘의 계약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관습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보다 합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약하게 부과된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규범적 합의관계가 약한 것은 언론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가정되지만 개별 언론사는 대부분 이윤추구를 하는 자본주의 언론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3자 합의 관계의 구조적 급소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위의 3자 합의관계가 지켜지려면 자본주의 언론기업 내부의 또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인 언론시주와 기자집단이 시민사회와 맺는 합의관계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언론시주-기자집단 3자의 규범적 합의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언론사주-기자집단의 합의관계

이 관계는 <그림 1>에서 제도로서의 언론이 시민사회와 맺는 규범적 합의관계를 세분화해 본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사주의 관계는 언론사주가 경영자로 공익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매체를 이윤추구를 위한 영입에 사용할 수 있는 매체영업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가정된다. 언론의 공익성은 궁극적으로 기자들의 실천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언론사주의 공익성 약속은 결국은 편집권의 독립을 약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민사회와 기자의 관계는 시민사회가 발언권을 위임하는 대신 기자가 공익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기자의 공익성은 부여받은 편집권을 회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전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언론사주와 기자의 관계는 언론사주가 편집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자는 기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상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3자의 합의 관계가 지켜지면 언론사주는 적절한 이윤을, 기자는 상징권력을, 시민사회는 대리인을 확보하게 된다. 언론윤리강령으로 표현되는 언론관행의 이념형은 이 3자 합의관계의 균형 속에서 탄생한다.

하지만 이 3자 합의관계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사주, 시민사회와 기자의 합의는 강제력이 없는 느슨한 규범이고, 언론사주와 기자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권력관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균형의 유지가 어렵다. 툰스탈(Tunstall, 1974, pp.25)은 신문기업 자체는 상업적이지만 뉴스 생산조직 내부는 상업적 목표와 다른 나름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하트(Hart, 1980, pp.268)도 신문이 민주주의 제도로서 공익적 역할보다 기업으로서 이윤추구에 주력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와 상업적 조직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언론사주의 이윤추구 동기와 기자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구조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은 3자 합의 관계의 실질적 무게중심이 언론사주와 기자집단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 합의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자집단이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 위에서 언론시주와 기자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건 위에서 언론윤리는 3자의 이해관계가 교섭되고, 공유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집단이 언론시주에 대해 종속적 위치에 있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더라도 스스로 탈정치적 직업적 이해관계와 조직의 상업적 이익을 교섭하는 상황이라면, 언론윤리는 언론시주와 기자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위선적인 수사학으로 귀결되기 쉽다.

이러한 두 개의 3자 관계를 분석틀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언론윤리가 조형되는 과정에 개입한 역사적 조건과 기자의 직업적 위치에 대한 분석이고, 둘째는 이 조건에 따라 언론윤리를 형성해 나간 기자집단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첫째 분석은 한국 언론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3자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에 따른 기자의 직업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 연구의 논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은 기자집단 내부에서 제기된 언론윤리에 대한 담론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비교적 기자들의 진솔한 생각이 잘 나타나는 업계지인 『관훈저널』로 정했다.⁶⁾ 『관훈저널』은 1959년에 창간된 계간지 『신문연구』가 개명된 것으로 2009년 겨울호까지 통권 113호를 발간했다. 통권 113호까지는 대략 2000여편의 글이 게재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글은 특집과 언론관련 기고문, 그리고 기자들의 현장 취재기 등이다. 이 중에서 제목에 ‘윤리’, ‘자정’ 등의 표현이 들어간 글 23편과 언론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 글 28편 등 모두 51편의 글을 참조했다.

4. 언론—정부—시민사회 3자 관계와 기자의 직업적 위치 변화

한국 언론사는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언론—정부—시민사회의 3자 관계는 정부—언론의 관계에 무게중심이 실려 왔다. 적어도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1987년 이전까지는 정부—언론의 관계가 3자관계의 성격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전개과정에서 3자관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동시에 변하는 1987년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전제하에 여기서는 87년 전후의 3자 관계와 기자의 직업적 위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직업적 위치가 직업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1987년 이전 기자의 직업적 위치

민중계몽을 위해 신문이 창간된 구한말은 정부가 주체가 되거나(한성순보) 재정적 후원자(독립신문)였기 때문에 언론—정부의 영역분화 자체가 불완전하고, 시민사회는 미처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일제

6) 『관훈저널』은 업계지이지만 주로 증견 및 원로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70~80년대에는 정치적 탄압 때문에 기자들의 표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글을 모든 시기에 모든 기자들의 진솔한 의견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매체 중에 그나마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선택했다.

강점기는 식민정부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언론이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민중계몽의 전위 역할을 했다. 3자 관계의 틀로 보면 정부-언론, 정부-시민사회의 관계는 식민정부의 강압적 통제, 언론-시민사회는 민중(시민사회)의 전폭적 위임, 언론사주와 기자집단의 관계는 위계관계가 불분명한 ‘동업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⁷⁾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민중의 절대적 위임을 받은 존재로 오로지 식민정부의 통제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자리에서 있다. 이종숙(2004)에 따르면, 언론의 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언론사주와 기자집단의 동업자적 관계가 지속돼 신문제작이나 지면편집으로 참여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계기로 정권의 통제에 순응하면서 기업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언론사주와 통제에 저항하는 기자집단이 마찰을 빚으며 언론은 분열된다. 이후 언론은 정권을 등에 업은 언론사주에 의해 장악되고, 언론사주와 기자집단은 분명한 위계관계를 맺게 된다. 이로써 정부-언론의 직접적 갈등관계는 언론사주를 매개로 한 정부-기자집단의 갈등관계로 전환된다. (김해식, 1992) 하지만 언론사주를 통한 통제가 1971년에서 1975년에 걸친 언론자유수호운동으로 흔들리자 박정권은 회유책을 병행하면서 언론인에 대한 분할 통치 정책을 폈다. 이는 정치적 통제에 순응하면 특혜를 베풀고, 저항하면 엄격한 법적·행정적 통제를 통해 도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프레스카드제 발급을 통한 기자들의 계층화, 잔존언론인에 대한 임금인상 종용의 형태로 나타났다.⁸⁾ 5공화국 들어서는 분할 통치가 대량 강제해직과 잔존 언론인에 대한 파격적 특혜라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 언론인의 계층화가 심화되면서 언론사주-기자집단의 갈등관계가 언론사주-순응적 기자집단-저항적 기자집단의 형태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⁹⁾ 저항적 기자집단은 정권의 강제해직과 이를 경영합리화의 기회로 이용한 언론사 자체 결정에 의해 언론현장 밖으로 내몰리고, 순응적 기자집단이 언론현장에 잔존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박인규, 1989, 202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시점까지 언론현장은 정부-언론사주-기자집단의 위계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됐다. 이 관계에서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통제에 순응하고 언론현장에 남거나 저항하고 퇴출되는 선택권만 남았기 때문에 잔존 언론인은 통제에 소극적으로 순응하거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회유책을 향유하는 직업적 선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7) 일제강점기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 즉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의 존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다. 하지만 당시 민중의 보편적 의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로 식민정부에 저항한 임시정부가 상해에 존재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 언론이 존재했기 때문에 민중의 존재는 3자 관계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8) 1975년 동아, 조선 사태를 계기로 기자들이 임금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중앙일보의 경우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이 31.7%인데, 1975년의 경우 전년대비 6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박인규, 1989, 214-215쪽).

9)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제해직 언론인은 870명, 통폐합관련 해직 언론인은 305명에 이른다(여영무, 1989, 41쪽). 잔존언론인에 대해서는 임금의 대폭인상,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 해외연수 기회부여,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 주어졌다(이효성, 1989, 188쪽).

10) 한국언론의 전문직화 과정과 직업정체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자들이 정치적 통제와 상업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물질적 혜택과 정계진출과 같은 권력의 분점을 향유하는 후자의 선택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종숙(2004)은 한국 언론의 전문직화(Professionalism)를 탈정치적이고 비윤리적인 ‘전문화’(Specialization)로, 남재일(2004)은 기술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전문기능인주위’로, 이정훈·김균(2005)은 전문직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샐러리맨화’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사정권 시기 시민사회-정부의 관계는 시민사회 역시 언론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재야운동권과 저항적 지식인이 민주화라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미미하게 표출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시민사회-언론의 관계는 언론 역시 민주화를 위한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87년 이전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영역으로부터 부담스런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식민정부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자리에 서 있었고, 군사정권 시기는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시민사회 영역과 이해관계를 교섭하는 위치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위임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기 언론의 윤리는 직업윤리의 좁은 틀을 벗어나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란 큰 틀에서 상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1987년 이후 기자의 직업적 위치

1987년 이후 정권의 통제가 약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정부-언론-시민사회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재편된다. 90년대 들어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강화되면서 1)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도 한층 강화 됐다. 이전까지 언론운동은 주로 YMCA 모니터 클럽 등의 소규모 단체가 주도하는 소극적인 언론소비자 운동이 주류였다(임동욱, 1995). 하지만 공격적인 불매운동인 ‘안티조선’을 거쳐 광고주를 압박해 신문사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키고자 한 최근의 언론소비자운동까지 시민사회의 언론개입은 더욱 직접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언론의 관계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의 관계도 재편됐다.

정부-언론의 관계는 정부 중심의 수직관계에서 상호 교섭하는 수평관계로 이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¹¹⁾ 87년 이후 정부-언론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든 언론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신장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논지는 없다. 하지만 신장된 언론의 자율성이 언론시주-기자집단 관계에서 기자집단의 자율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거의 없다. 그런데, 기자들이 누리는 임금과 매체의 영향력을 사유화해서 얻는 사적 이익은 오히려 신장된 측면이 있다.¹²⁾ 이러한 기자들의 애매한 직업적 위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자본의 권력화가 심화돼 언론시주에 대한 기자들의 종속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자유에 대한 통제도 정치적 통제에서 자본권력의 통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인숙, 1997; 류한호, 1994). 여기서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는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순응으로 전제된다. 둘째는 언론이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권력기구화하면서 기자들

11) 민주화 이전까지 재야, 노조, 학생 등의 민주화세력에 의해 유지되던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1994년 9월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결성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민운동의 방향도 과거의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노사, 복지, 언론, 장애자, 여성, 소비자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다. 90년대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조대엽(1999)을 참조하라.

12) 민주화 이후 국가-언론의 관계변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승관·장경섭(2000), 남재일(2006b)을 참조하라.

13) 7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인상된 기자 임금은 80년대에 이르러 타직종과 비교해도 최고수준에 이른다. 1988년 동아일보의 연봉은 초봉기준 12,136,000원, 7년차 18,448,250원이다. 88년 언론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0~40%에 이른다(강명구, 1993, 115-117쪽).

이 여기에 편승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김민남, 1995; 양승목, 1995; 최장집, 1994; 조항제, 2002) 이 관점은 기자의 능동적 선택을 인정하고 사주와의 관계를 위계 속의 교섭관계로 가정한다. 셋째는 앞의 두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주장인데, 1987년 이후 기자의 직업적 정체성은 하나의 기자집단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기자집단을 순응적 기자집단과 저항적 기자집단으로 나누어 볼 것을 요구한다. 민주화 이후 언론노조운동을 권력기구화 하는 언론의 성격변화에 대응하는 기자집단의 자구책으로 본 강명구(1993)의 연구가 이 관점을 가정하고 있다.¹⁴⁾

언론-시민사회의 관계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정치적 노선에 따라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김대중 정권부터 한국 언론은 보수-진보로 양극화 된 한국사회의 권력구조에 언론이 편승함으로써 언론이 매우 강한 정파성을 보이는 권력과 언론의 ‘병행적 양극화’(press-party parallel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윤영철, 2007, 293쪽). 즉 정당을 매개로 시민사회가 양극화되고, 여기에 언론이 가담하면서 정부-언론-시민사회의 관계가 보수-진보의 양극화된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정파성 심화로 기자들은 본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소속사의 정치적 논조에 순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처럼 87년 이후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 놓여 있다. 또 ‘순응적 기자집단’과 ‘저항적 기자집단’의 위치가 다르다.¹⁵⁾ 달라진 기자의 위치를 3자 관계의 틀 속에서 거칠게 도식화 하면 핵심적 변화는 정치권력의 통제가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화됐다는 것은 과거 민족해방과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언론에 전폭적으로 위임했던 시민의 권리를 시민사회가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즉 언론은 무한대의 책임(혹은 권리)을 짊어졌던 지사의 위치에서 직업적 규범에 충실한 직업인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시민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 충실하자면, 언론윤리는 언론자유의 관점이 아니라 통제가 강화된 자본과의 독립적 관계 정립, 통제 대신 유착관계로 언론을 회유하는 취재원과의 독립적 관계 정립 등 뉴스 생산 현장 내부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직업윤리의 틀 속에서 상상돼야 한다. 과연 그러했는가? 다음은 3자 관계와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 변화에 따라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윤리에 접근했는지 기자들의 언론윤리 관련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4) 기자집단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가정하면, 언론노조운동, 한겨레신문 창간과 현재 진보언론의 존재가 한국 언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갖는 의미가 주변화 된다. 기자집단을 수적으로 우세한 보수매체의 기자들로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언론의 관계를 제도적 수준에서 조망하는 거시적 접근은 ‘언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정하면서, 기자집단의 정체성을 언론사주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언론’을 뉴스 생산의 구조와 저널리즘 실천이 매개되는 문화적이고 경험적인 양식이 아니라 사회체계 혹은 제도의 한 부분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기자집단’을 현재 뉴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배치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기자집단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언론사에 잔존한 순응적 기자집단이 대표성을 띠게 되면서 저항적 기자집단의 존재는 축소된다. 따라서 뉴스 매체의 성격이 보수매체와 진보매체로 구별되고, 기자들의 직업적 정체성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기자집단을 이원화 해보는 시각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5) 이 두 개념은 은유적 의미가 다분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엄격한 조작적 정의는 어렵다. 하지만 기자의 의식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분류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순응적 기자집단’은 군사정권시기 언론현장에 잔존해서 제도언론의 부패구조에서 직업적 이익을 향유한 집단, 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정운동과 무관하게 시주종속 상태에 순응한 집단을 의미한다. ‘저항적 기자집단’은 군사정권시기 언론자정운동 등으로 해직된 기자, 한겨레신문 창간에 가담한 기자, 87년 민주화 이후 보수매체에서 언론노조를 통해 언론자정운동, 공정정보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5. 언론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대응방식: 『관훈저널』에 나타난 언론 윤리 담론의 전개양상

기자들의 언론윤리 대응방식은 윤리강령의 제정배경, 윤리강령의 내용 변화 추이, 윤리강령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및 태도, 기자들의 실질적인 윤리적 실천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윤리강령의 제정 배경과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선언적 성격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판단해서, 여기서는 언론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글에 나타난 기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¹⁶⁾

1) 87년 전후 언론 담론의 변화 추이 : ‘언론자유’에서 ‘언론윤리’로

1959년부터 2009년까지 『관훈저널』에 나타난 언론 관련 담론의 전체적 흐름은 1989년을 전후로 뚜렷이 양분된다. 1959년부터 30년 동안 『관훈저널』의 지배적 논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강조였다. 89년 이후는 ‘언론의 자유’란 표현은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윤리’가 대신한다. <표 1>은 전체 글에서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언론의 책임, 언론윤리 등 네 개의 표현이 들어가는 제목의 연도별 빈도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윤리’처럼 세 개의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는 글은 각 항목에 1로 처리했다.)

<표 1> 시기별 제목에 나타난 주제어의 빈도

| 연도 \ 주제 | 언론의 자유 | 언론의 독립 | 언론의 책임 | 언론윤리 |
|-----------|--------|--------|--------|------|
| 1959~1969 | 11 | 9 | 9 | 1 |
| 1970~1979 | 8 | 1 | 3 | 0 |
| 1980~1989 | 7 | 0 | 0 | 6 |
| 1990~1999 | 1 | 0 | 1 | 18 |
| 2000~2009 | 2 | 0 | 0 | 10 |

이 표는 언론의 자유, 독립, 책임의 강조에서 언론윤리의 강조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윤리 관련 글은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윤리 특집을 게재하기 전까지 1966년 겨울호에 실린 당시 동아일보 외신부기자 여영무의 ‘신문의 윤리’ 1편 밖에 없다. 이 글도 일반적인 언론윤리의

16) 한국 언론의 윤리강령은 1957년 협회차원에서 처음 제정됐고, 1987년 이후 각 사별로 윤리강령이 제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등 몇몇 언론사가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대 개정된 윤리강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김재영·양선희, 2007; 최경진, 2008; 남재일, 2006a)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은 여전히 실천의 가이드로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같은 시기 기자들의 언론윤리식 조사결과(남재일, 2006a)에서도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윤리강령의 선언적 성격이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윤리강령의 성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윤리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를 언론윤리에 대한 기자들의 대응방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내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자들의 대응방식을 설명하는 참조자료 정도로 해석에 포함시켰으며, 별도의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중요성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며 미국의 신문윤리 정착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국 언론의 현실과 언론윤리를 연결하는 대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 언론의 현실적 문제와 관련시켜 ‘언론윤리’란 표현을 사용한 글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9년이다. 이전까지 언론 관련 담론은 모두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이라는 프레임 안에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에 대한 강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는 1959년부터 1965년까지로 표에 제시된 1959~1969년 사이 글의 93%가 이 시기에 나타난다. 언론윤리관련 담론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언론윤리를 주제로 한 특집의 형태로 언론윤리 일반의 문제를 다룬 글이 집중적으로 게재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성애보도와 윤리’, ‘기자의 전문성과 인터뷰 윤리’ 등 개별 취재상황에 대한 윤리적 질문과 보도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에 따라서는 기자들의 글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틀로 언론윤리를 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시급한 윤리적 문제를 ‘자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논의가 많은 반면, 언론학자들의 글은 주로 언론윤리를 전문직 직업윤리로 가정하고 서구의 언론윤리를 이념형으로 제시하는 일반론의 성격이 강하다.

87년을 전후해서 담론의 흐름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서 언론의 직업윤리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87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기자의 직업적 위치와 대체로 조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큰 틀로 보면 이런 추이는 이념형으로 제시된 전문직의 직업윤리 담론이 한국 언론현실에 적용되면서 언론의 부패구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나타나고,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서 윤리적 행위에 대한 논의로 정교화 되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윤리의 제정과정과 언론윤리와 관련된 글만 따로 보면, 기자의 직업적 위치와 조용되지 않는 이행 과정의 ‘특수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특징들을 세 개의 항목으로 정리했다.

2) 한국 언론윤리 형성과정의 특수한 경험

(1) 윤리강령과 언론윤리 담론의 수사적 성격

한국에서 협회차원의 윤리강령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7년이며, 실천요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다. 이 시기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직업윤리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지사적 위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구의 언론윤리강령을 그대로 모방한 윤리강령이 제정된 것은 윤리강령의 제정 동인이 기자들의 자발적인 직업윤리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제정에 적극 참여했던 박권상(1991, 100쪽)은 “다분히 군사정부의 법적 통제를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회피하지는 저의가 깔려 있었다”고 함으로써 윤리강령의 동인이 외부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1957년에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왜 1989년까지 언론윤리에 관한 담론은 거의 없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강조만 있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애초에 언론윤리강령의 용도는 내부의 실천을 안내할 규범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을 저지할 방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담론과 같은 용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자유에 대한 강조나 윤리강령의 선언은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사적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언론윤리 담론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에도 유사한 외부적 동인이 개입한다. 한국 언론의 윤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관심은 1988년 설립된 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언론자정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론자정운동은 촛지수수의 통로인 기사단의 역기능해소, 사별 윤리강령제정, 자정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 내부의 개혁운동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의 자각과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일련의 촛지수수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언론계 내부에 언론윤리 일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88년 깃발이 올려진 언론자정운동은 91년에 일련의 언론계 촛지사건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일정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91년 초의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한 언론계 촛지의혹과 10월의 보사부기자단 촛지사건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언론자정은 이제 언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중략) 언론계 촛지수수가 사회문제화되자 각 언론사는 해당기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으며 또한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취재실비의 부담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박인규, 1993, 49쪽)

90년대 초반에 언론사 단위의 윤리강령이 잇따라 제정된 시점은 일련의 촛지수수 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점이다.¹⁷⁾ 『관훈저널』에 언론윤리 관련 담론이 급증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 시점은 군사정권과의 오랜 유착으로 ‘자정’이라는 현재부정형을 구호로 내세워야 할 만큼 언론의 구조적 부패가 심각할 때이다.

언론인에 관련한 추악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인이 취재원에게 받는 이른바 ‘촛지’는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돈봉투를 받고 이권을 얻는 것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윤리에 어긋난 것이고 도덕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윤리 부도덕이 버젓이 제도화되어 이른바 ‘제도언론’을 형성하고 있다. (박관상, 1991, 103쪽)

부패를 자인하는 언론 내부의 자정운동이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언론윤리에 관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인규(1993, 59쪽)는 “91년 이후 언론사들이 언론자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주체적 참여라기보다는 독자들의 눈을 의식한 전시용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평가한다. 언론윤리 담론이 적어도 초기 논의에서는 실천을 안내할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 전략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2) 구조화된 인식과 실천의 괴리

언론윤리강령이 직업윤리 강화보다 외부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자유의 전략으로 제정됐고, 윤리관련 담론도 사회적 비판에 대응한 수사적 전략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언론내부의 개별 구성원

17) 한국에서 언론윤리강령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7년 4월 7일로 한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이름으로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이 한국 언론윤리강령의 효시이다. 1961년 9월에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채택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됐다.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거의 40년 동안 유지되다가 1996년에야 7개 조항의 윤리강령과 16개 조항, 63개 세부규정으로 세분화된 실천요강으로 대폭 개정됐다. 개별언론사 단위로는 한겨레신문이 1988년 창간과 더불어 윤리강령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9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자체적인 보도준칙을 마련했고, 2000년대 들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등이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이 중에서 외부적 동인 없이 언론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제정과 2000년대 몇몇 언론사가 보도준칙을 보완한 것 정도라 할 수 있다.

들에게는 자발적 동의와 실천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부과되는 형태로 언론윤리를 접하게 됐음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윤리가 조형되는 초기부터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불가피한 형태로 언론윤리 논의의 맥락이 형성돼 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언론의 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음이 언론인들의 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 대부분의 일간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에 가입하고 윤리위원회 정관에 따라 신문마다 신문제호 밑에, 아니면 눈에 띄는 장소에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게재하고 있다.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중한 형식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그들이 준수할 것을 매일 서약하고 있는 신문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어느 정도 유의하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박권상, 1996, 7쪽)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회칙을 들여다보면 이 위원회의 권능이 이렇게 강력했던가 하고 새삼스럽게 놀라게 된다. 회칙대로라면 신문윤리위의 권능은 실로 막강하다.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어긴 회원사에 대해서 위원회는 ‘주의’, ‘비공개 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나 ‘자격정지’ 또는 ‘제명요구’까지 할 수 있다. (중략) 신문윤리위원회가 그렇게 강력한 제재장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기자들조차도 신문윤리위원회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유승삼, 1996, 18~19쪽)

신문사와 제작진이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만 제대로 지키면 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과 신문사 내의 불만은 거의 사라지고 우리나라 신문의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개정된 지 7년이 넘도록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대한 신문사와 언론인들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성병욱, 2003, 7쪽)

언론인의 윤리 인식과 실천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언론윤리 관련 글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는 직업윤리의 당위성에 찬성하지만 과거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못한 ‘실천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여전히 기자의 위치를 지사적 위치로 가정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인식의 실패’ 탓도 있다.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지사적 위치에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란 질문으로 언론윤리를 상상한다. 이러한 인식의 패러다임은 책임을 의무보다 권리에 가깝게 해석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책임과 윤리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3) 책임과 윤리의 개념적 혼돈

“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언론의 자유는 죽음보다 값진 것이다.’, ‘기자의 책임은 무한하다.’ 40여 년 전 신문·통신사의 대선배들이 서울신문학원에서 강의하던 말이다.” (신상현, 1996, 28쪽)

위에 인용한 대목은 한국 기자들이 직업정체성에 대해 갖는 생각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흔히 ‘지사적 기사상’으로 명명되는 기자의 위상은 사회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과 헌신을 전제한다. 이러한 기자정체성은 구한말부터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민중을 대변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다양한 목소리를 증대하고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언론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은 국민에 대한 배려의

소홀과 ‘월권’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관심이 언론의 자유보다 언론의 책임추궁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권상, 1996, 11쪽)

국민의 언론에 대한 기대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로 옮겨갔다는 것은 ‘언론의 책임’ 부담이 줄거나, 방향이 변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기사들의 글 속에 나타나는 자아정체성은 ‘윤리적인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헌신적인 지사’이며, 언론윤리 역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에 대해 언론학자 김정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90년대 들어와서도 언론인들은 문민정권 아래서 변화된 언론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적 책임윤리’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예기치 않았던 부분에서 언론윤리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촌지수수, 미공개정보의 유용, 선정보도의 횡행 등이 그것이다. (중략) 90년대의 언론인은 ‘사회적 책임윤리’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윤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김정기, 1999, 190쪽)

언론의 윤리를 사회적 책임의 틀에서 보면, 언론윤리 중 중요한 부분인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과 같은 보도윤리 부분이 ‘언론의 책임’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면서 윤리의 범주에서는 간과되기 쉽다. 한국 언론이 진실보도와 공정성 등을 윤리강령에 선언적 형태로 넣고 보도준칙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도 책임과 윤리 개념의 혼돈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 언론은 책임에 매우 많은 것을 포함시키면서 윤리는 매우 협애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의 지적은 그 결과가 어떤 형태의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과거의 신문윤리강령이나 새로 제정된 윤리강령이 다 같이 신문의 ‘책임’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언론의 품위’와 같은 한정된 문제에 대해서만 언론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논평’,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주성’ 등 언론의 본질과 관련한 윤리의 확립 역시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의 역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제까지의 심의는 거의 대부분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오보, 과장보도, 저속표현 등에 관한 것이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나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 혹은 언론의 자주성 같은 문제를 대상으로 삼았던 기록은 찾기 어렵다.” (유승삼, 1996, 19쪽)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경향을 비판한 이러한 지적은 한국 언론이 윤리의 문제를 법적문제나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문제 등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리 개념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정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윤리를 상상하면서 실질적인 윤리적 문제를 놓치는 인식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즉 사회적 책임이란 느슨한 의무에 언론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포함시키고 보다 엄격한 의무인 윤리 영역에서 이 역할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분석결과에 대한 함의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 언론윤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자의 직업적 위치 변화와 언론윤리 담론의 전개 양상에 나타난 특수한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여기서는 논의 결과를 이 연구의 분석틀에 기초해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윤리 정립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기자의 직업적 위치는 정권과 언론사주에 종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율을 전제로 하는 전문직 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때문에 1957년에 제정된 언론윤리강령은 30년 동안 유명무실한 선언으로만 존재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기자들의 ‘윤리적 실천’은 언론자유수호운동이란 형태로 유지됐다. 『관훈저널』의 논조도 언론자유 의 강조가 가장 우선시 됐다. 이 시기 윤리적 실천이 언론자유수호로 나타난 것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언론윤리는 시민사회-언론사주-기자집단 3자의 자율적인 교섭과 타협의 결과인데, 정권과 언론사주에 종속된 기자의 위치에서는 언론자유가 직업적 자율성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자유수호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87년 민주화 시점까지 정부-언론사주-기자집단의 위계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됐다. 이러한 직업적 위치에서 기자집단의 대응은 언론현장에 남아 적극적으로 통제와 순응의 반대급부를 챙기거나 장외에서 언론자유수호운동을 지속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전자의 선택은 취재보도관행의 극심한 부패를 초래했고, 후자의 경우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겨레신문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의 통제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정부-언론-시민사회 3자관계의 구도도 변했다.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견제가 부재하는 사이 언론은 스스로 권력기구화하면서, 기자집단 역시 언론사주의 권력에 편승하는 길을 걷는다. 정부와 언론사주는 유착관계, 언론사주와 기자집단의 관계는 종속적 교섭관계가 유지됐다. 언론인으로서의 자율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사적 이익은 크게 신장됐다. 취재보도관행은 취재원과 오랜 유착으로 초래된 제도언론의 부패구조가 여전히 유지됐다. 하지만 언론 내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패구조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88년 언론노조가 설립되면서 ‘언론자정운동’이 시작되고, 같은 해 한겨레신문이 창간과 동시에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대다수의 기자들은 제도언론의 부패구조에 젖어 직업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업적 이익의 포기를 의미하는 ‘자정’과 ‘윤리’는 파급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91년 언론계의 관행처럼 당연시 여겨지던 일련의 촛지수수 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가 직접 나서 관련자를 징계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관훈저널』에 언론윤리 담론이 집중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런 사실은 한국 언론의 언론윤리 논의가 애초에 실천의 의지가 없는 수사적 전략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별기자들이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서구의 윤리강령과 전문직 직업윤리관이 던져졌기 때문에 인식과 실천의 괴리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언론윤리 담론의 수사적 성격과 더불어 한국 기자들의 의식 저변에 깊이 각인된 ‘지사적 기자’라는 직업 정체성도 전문직 윤리로서 언론윤리가 정립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언론자유 수호의 지상과제이던 시절에는 강한 적과 맞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지사적 기자’가 사회적 요구와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적 상황에서는 시민을 배려하는 윤리적인 전문

직업인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한다. ‘지사적 기자’의 관점에서 언론윤리는 전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윤리’의 형태를 띠게 된다. 하지만 전문직업인에게서는 직업집단의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구체적 행동윤리’의 형태를 띤다. 지사적 기자를 전제로 언론윤리를 상상하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업적 윤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2000년대 들어 심화된 언론의 정파성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론이 진보-보수의 권력구조와 병행적으로 양극화 된 현상은 중립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언론의 과도한 현실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과도한 현실개입은 스스로 사회적 ‘선’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사적 기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전형적 형태이다. 사회적 책임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헌신이 아니라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종의 월권이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이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지사적 기자’상에서 못 벗어났거나, 아니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한국 언론은 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어긋난 방식으로 언론윤리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윤리를 정립하는 언론 내부의 문제가 윤리강령을 포함한 윤리담론의 수사학적 성격과 기자정체성에 대한 낡은 사고에 있다면, 시민사회의 접근방식은 한국 언론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언론학자들의 윤리관련 글은 대부분 전문직 직업윤리라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언론윤리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한국의 역사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경험, 즉 언론자정운동, 한겨레신문의 창간, 정파성 등의 특수한 의미에 소홀하기 쉽다. 일례로 2000년대 들어 심화된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언론윤리 차원의 논의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언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파성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거부한 ‘저항적 기자집단’이 뉴스 생산의 장에서 일정지분을 확보하면서 보수일변도의 논조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윤리적으로는 언론자유수호운동과 언론자정운동을 통해 스스로 언론윤리를 정립하고자 한 ‘저항적 기자집단’과 제도언론의 부패구조에 순응한 ‘순응적 기자집단’의 대립과 갈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매체의 정파성은 언론 전체의 정치적 공정성과 도덕성을 지지하는 긍정적 역할로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파성과 관련된 논의는 기계적인 중립성의 차원에서 결과적 정파성에 대한 양비론적 관점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저항적 기자집단’이 언론자유수호운동, 언론자정운동, 한겨레신문 윤리강령의 제정과 실천 등을 통해 이어온 자발적인 윤리적 실천의 의의가 축소된다. 동시에 오랜 권력-언론 유착으로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순응적 기자집단’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유보된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에 서구의 직업윤리관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는 자칫하면 과거 한국 언론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의미해석을 삭제해버리는 블랙홀이 되기 쉽다.

언론윤리는 기자의 직업적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언론윤리에 접근하는 기자집단 내부의 방식이나 사회적 요구의 양상이 현실에 충실할 때 직업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가 정립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윤리의 정립을 위해 기자집단 내부의 시급한 과제는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직업적 현실에 기초해 구체화하고, 엄격한 실천을 통해 시민사회를 설득하려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요구의 양상도 기자의 직업적 위치에 따라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기자의 직업적 위치를 자본에 종속되어 불가피한

순응의 상태로 보면 기자집단에 언론윤리를 요구하기 앞서 언론사주에 대해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자의 순응을 강요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 인정하면 언론사주에 대해서는 편집권 독립, 기자집단에 대해서는 언론윤리가 요구돼야 한다. 또 기자집단을 이원화 하면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기자집단에는 언론윤리가, 자본에 종속된 기자집단에는 편집권 독립이 앞서 요구돼야 한다. 언론의 정파성 문제 또한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이념형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정파성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언론윤리가 수사의 장이 아니라 시민과 기자의 이해관계가 정직하게 교섭되는 소통의 장이 될 때 전문직 윤리가 정립되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이 바탕 위에서 시민사회와 기자의 사회적 연대가 공고해질 때 기자집단은 정부 및 언론사주와 교섭이 가능한 독립적 주체로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참고문헌

- 강명구 (1993).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김민남 (1995). 한국언론의 권력기관화. 방정배·김민남 (편), 『언론과 현대사회』, (81~94쪽). 서울: 나남.
- 김영옥 (2004). 『한국언론의 윤리 점검 시스템』.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재영·양선희 (2007). 한·미신문의 윤리적 실천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6호, 243~266.
- 김정기 (1999, 가을호). 언론윤리의 발상전환. 『관훈저널』, 통권 72호, 183~199쪽.
- 김춘옥 (2008). 歐美 미디어윤리 연구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집 2호, 215~234.
- 김해식 (1992). 196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성격변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재일 (2004). 한국 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6a). 『한국 언론윤리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06b).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청와대출입기자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권4호, 95~124.
- 류한호 (1994). 내적언론자유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권상 (1991, 여름호).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윤리. 『관훈저널』, 통권 51호, 85~103.
- _____ (1996, 겨울호).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윤리. 『관훈저널』, 통권 63호, 1~16.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14-3호 81~113.
- 박인규 (1989, 1월호). 한국 언론사주들의 굴절. 『월간경향』, 202.
- _____ (1993, 여름호). 언론자정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오늘의 문제점. 『관훈저널』, 통권 55호, 38~71.
- 성병욱 (2003, 여름호). 자율개혁·자율정화로 자율개혁 극복해야. 『관훈저널』, 통권 87호, 1~7.
- 신상현 (1996, 겨울호).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윤리. 『관훈저널』, 통권 63호, 25~41.
- 양승목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93~146쪽. 서울: 소화
- 여영무 (1966, 겨울호). 신문의 윤리. 『관훈저널』, 통권 11호, 211~216.
- _____ (1989, 10월호).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언론구조 개편과 제도언론. 『신문과 방송』, 41.
- 유승삼 (1996, 겨울호). 신문윤리위원회의 '현주소'와 과제. 『관훈저널』, 통권 63호, 17~24.
- 유홍식 (2003, 여름호). 디지털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61~87.

- 윤영철 (2007). 민주주의 유형과 언론개혁. 임상원 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283~326. 서울: 나남.
- 이경희 (2006). 『한국 언론윤리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영주 (2006). 언론과잉 시대의 언론윤리에 대한 소고. 『언론과 사회』, 14권 1호, 6~4.
- 이은택 (2002). 국내 언론인의 도덕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289-318.
- 이정훈 · 김균 (2006).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9-88.
- 이종숙 (2004). 한국 신문의 전문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성 (1989). 『정치언론』, 188쪽. 서울: 이론과 실천.
- 임동욱 (1995).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성격과 방향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33호, 165~201.
- 정인숙 (1997). 한국언론의 자유와 통제구조 연구. 『한국언론 200년 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서울: 관훈클럽.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서울: 나남.
- 조항제 (2002).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권력』. 서울: 한울.
- 최경진 (2008). 신문윤리의 자율규제 규범과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628~666.
- 최장집 (1994).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6호, 146~169.
- Allison, M.(1986). A Literature Review of Approaches to the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2). 5~19.
- Altheide, D. (1976). *Creating Reality : How TV News Distorts Event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Black, J. & Barney. R.(1990). Toward Professional, Ethical Journalism. *Mass Comm. Review*, 7(1/2). 2~13.
- Christians C. (2004). Eth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Media Studies*, (pp.19~40). New York : Sage Publications.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ns, H. (1979a).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Y: Pantheon Books.
- _____ (2005b) *The News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 박영도 공역 (2000).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Hart, D. J. (1980).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Publishers and Journalist : an Overview. in Smith(ed.), *Newspaper and Democracy*. MIT Press.
- Kaul, J. (1986). The Proletariat Journalist: A Critique of Professionalism.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2), 47~55.
- Kimball, P. (1965). *Journalism: Art, Craft or Profession?* In Kenneth C. Lynn and the Editors of Daedalus(eds.), *The Profession in America*. Boston: Houghton-Mifflin.
- Lambeth, C. (1992). *Committed Journalism: An Ethic for the Professional*.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Lippmann (1927). *The Phantom Public*.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McLeod, M. and Hawley, S. Jr. (1964). Professionalization Among Newsmen. *Journalism Quarterly*, 41(4), 529~539.
- Merrill, John C.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Y: Basic Books.
- Snow, R. (1983). *Creating Media Cultur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Tuchman, Gaye (1978). *Making the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unstall, J. (1974). *Journalist at Work*. London: Sage.
- Ward. S. (2004).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이은택 역 (2007). 『언론윤리의 재발견』. 서울: 에피스테메.

ABSTRACT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Korean Journalism Ethics as Job Ideology

Jae-II Nam*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journalism ethics as job ideology by analyzing the specific conditions revealed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Korean journalism ethics, focusing on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s which intervene in the construction of journalism ethics. By this interpret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s in journalism ethics discussion and practice strategies in the journalism fiel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phase of discourse in journalism ethics in which the job position of Korean journalists have changed. In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discourse of Korean was used for the instrumental and rhetorical means to cope with the outside pressure in the lack of occupational self-control which becomes the premise of ethics. Because of this, the Korean journalism ethics characterize the rhetorical feature of ethical code, the structured separation of practice from cognition, the conceptual confusion of responsibility from ethics.

Keywords: journalism ethics, job ideology, job position, ethical code, rhetorical characteristics.

* Assistant Professor(Dept. of communi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